

##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도모를 위해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역량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7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
-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한-싱가포르 및 한-캄보디아 공동제작협정, 한-EU(유럽연합)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

#### 2. 신청대상

-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3. 공동제작 대상국

-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총 33개국)
  -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
  -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4. 지원내용

-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법인 포함)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 ※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자체인력 인건비,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
- 공동제작 유형 : 교환형, 공동작업형
  - ※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
- EFTA 4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의 공동제작 조건 준수

## 5. 지원규모 및 원칙

- 총○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억원 이내, 1사업자당 연간 총 4억원 이내(2편 이내)
  -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제작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가능
-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재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 6. 지원대상 선정

- 방송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양 국가간 공동소재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
  - 공동제작 프로그램 대상국 참여비율(현금·현물 등)이 높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
- 심사결과 : 심사 후 해당 사업자 개별통보

## 7. 제출서류

- ①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
- ② 사업수행계획서
- ③ 사업자현황자료
- 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
- 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2011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8. 제출방법

- 제출부수 : 제출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7부, CD수록 1부
- 접수기간 : 공고일 ~ 3. 5(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관련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 109 대동빌딩 12층 국제협력실 (우138-803)

##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연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이 불가함
- 본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함
- 상기 공고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공동제작 대상국가별 주요내용

[EFTA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창의적 기여를 하여야 함
- 제작물 및 재제작물 복사본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함

② 언어

-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함.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가능하며,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 작업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이와 다르게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캄보디아, EU27개국) 및 싱가포르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싱가포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싱가포르-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1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EU27개국) 및 캄보디아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캄보디아,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캄보디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캄보디아-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EU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우리나라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EU 제작자(모두 합하여)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30% 이상(애니메이션 35%이상)이어야 함
  - ※ EU는 2개국 이상 참여(애니메이션은 3개국이상)하여야 하며, 1개국이 10%이상 투자해야 함
- 기술적 예술적 기여는 투자와 비교하여 20%이내(애니메이션은 10%이내)여야 하며, 총 기여의 70% 이내(애니메이션은 65% 이내)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대 20%까지 가능함

###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이어야 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해야함